

[서식 예] 공시최고신청서(임차권설정등기)

공 시 최 고 신 청 서

신청인 000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실권되어야 할 권리의 표시

신청인 소유의 서울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 대 300㎡에 관하여 서울 ○○구 ○ ○길 ○○○ ◇◇◇를 위한 ○○지방법원 등기과 20○○. ○. 접수 제○○○호 임차권설정계약 존속기간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○. ○○.까지의 2년간, 임 차료 1개월 금 300,000원, 지급기일 매월 말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

신 청 취 지

위 권리에 관하여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 청 이 유

위 임차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위 임차권설 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신청하고자 하나, 등기의무자인 위 ◇◇◇〉는 행방불 명이므로 등기절차에 협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.

그러므로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.



소 명 방 법

1.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소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

1. 소갑 제3호증 해지통고서

1. 소갑 제4호증 주민등록말소자등본

첨 부 서 류

1. 위 소명방법 각 1통

1. 실권되어야할 권리의 목록 1통

2000. 00. 00.

위 신청인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ㅇㅇ지방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사소송법 제475 내지 제497조
불복절차 및 기 간	· 공시최고의 불허결정 및 제권판결의 각하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 즉시항고(민사소송법 제478조, 제488조) ·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444조)		
비 용	• 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• 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• 신문공고료: ○○○원 {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(대법원 재판예규 제1257호): 제3조(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방법) 「민사소송규 칙」제143조,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요지 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대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 법원 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}		
의 의	로 누구인지 분명하지 구를 할 수 있는 지위니 고, 아무도 그 신고를	아니한 이해관 가 권리가 있으 하지 아니한 !시키는 절차를	신고에 의하여 공시의 방법으는계인에 대하여 법률상 어떤 청 면 이를 신고하라는 최고를 하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를 말하며, 법률로 정한 경우에
기 타	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외음	는 없는 때에는 . ② 이 경우에 하여 단독으로	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 -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

※ (1) 관 할 법 원(민사소송법 제476조)

- 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 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. 다만,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에 신청할 수 있다.
- ②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(민사소송법 제492조)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. 다만,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,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.
-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.